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18호 2014. 3. 12.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68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369호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370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24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3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68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참여조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儀典)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9.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리·공원·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원·도로·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시설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3.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③ 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리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
2.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3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69호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선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3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70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총 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출단장 1인”을 “연출감독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0인”을 “50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연출단장”을 “연출감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급여지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문화관광과장·정선문화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장·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단원은 상임단원·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되, 명예단원·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예술단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로 한다.
- ⑤ 군수는 예술단 단원으로 퇴직한 사람 또는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단원은 정원 외로 본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단원의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 ② 일반 공개모집의 경우 단원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모집”을 “특별모집의 경우 단원”으로,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 단장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이상인 사람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될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원의 직”을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제3호 중 “손상시킨 자”를 “손상시킨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끼친 자”를 “끼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회피할 때”를 “회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하는 자”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단원은 그러지”를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 상임단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따른 상임단원에게 급여와 성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성과금, 수당, 보상금,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관람료 징수)”를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수할”을 “받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를 “다만, 군수가”로, “징수하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이내의 범위 내”를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10%”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연료 등) ① 예술단은 초청공연 시 초청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받은 공연료 등은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연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3월 12일

정선군 규칙 제1224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 ①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①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찰 보훈지청 등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급대상자 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국 가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훈번호	사망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